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 3. 7.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6월 23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5년 6월 23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89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5. 7. 7.) 상정 보류
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6. 3. 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갑수)

가. 제안이유

-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 중 비례대표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명문화
- 통장 위촉권자는 구청장인데 반하여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형평에 맞게 위촉권자 변경하여 대표성 확보
- 각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시간별로 규정된 수강료를 월 수강료 상한액으로 개정하여 강좌별 특성에 따라 수강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강좌 개설을 통해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나. 주요골자

- 비례대표 구의원 당연직 고문 명시(안 제17조제1항)
- 주민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권한을 동장 → 구청장으로 변경(안 제17조제2항, 제20조)
- 수강료 징수기준(세분화된 기준에서 상한액 기준으로 변경)(별표1)
 - 수강시간별 수강료 규정 → 월 수강료 상한액으로 규정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본 개정조례안은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코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 비례대표 구의원 당연직 고문으로 명시 (안 제17조)

- 현행 조문은 선출직 구의원만 해당지역 선거구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이 되었으나, 비례대표 구의원도 주소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는 것으로 변경함.

구 분	현 행	개 정
선출직 구의원	선거구 동 당연직 고문	선거구 동 당연직 고문
비례대표 구의원	규정없음	주소지 동 당연직 고문

- 선출직 구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획정된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을 말하며, 비례대표 구의원은 각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 선출된 의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은 선출직 구의원만 해당 되었으나 비례대표 구의원도 주소지 동에 한해서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동구를 비롯한 10개구에서 비례대표 구의원의 주민자치위원 당연직 고문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¹⁾과 당연직 고문이 하는 일, 실질적 활동내용, 타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주민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위·해촉 권한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 (안 제17조제2항, 제20조)

-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에 의하여 통장의 위·해촉권자는 구청장인데, 본 조례에 의한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위·해촉권자는 동장으로 되어 있어 형평에 맞게 위·해촉권자를 변경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조직이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통장은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써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임. (비교표 별도첨부)
- 아울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도봉구에서만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을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조직의 성격, 설치목적, 하는 일, 타구 사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 수강료 책정 방법 변경 (안 제10조 별표1)

- 현행 수강료는 10시간 이하, 20시간 이하, 20시간 이상 3개구간으로 구분하여 각각 월 13,000원 이하, 월 25,000원 이하, 월 30,000원 이하로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목당 월 30,000원 이하로 통일하여 징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 상한액 월 30,000원은 변동이 없으며, 상한액 범위 내에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신축성 있게 정하도록 하였고.

1)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③ 주민의 복지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④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의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25개 자치구의 수강료 상한액을 조사한 결과 양천구 20,000원부터 강남구 60,000원까지 징수하고 있으며, 30,000원이 12개구로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고, 35,000원 3개구, 25,000원 및 40,000원이 각각 2개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서울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상한액 30,000원은 적절한 금액으로 보이며, 또한 단순히 시간별로 구분하여 금액을 정하는 것 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좌별 특성에 따라 과목별로 신축성 있게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비례대표 구의원이 주소지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선출직 구의원은 해당지역 선거구 동의 주민자치 위원회 당연직 고문이므로 비례대표 의원과 실질적인 활동내용이 중복될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또한 비례대표 의원은 영등포구를 대표하여 활동하여야 하나 비례대표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명시될 경우 비례대표 의원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현행 규정대로 수정하였으며,
-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회관 실태와 주민자치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현재의 임기제에서는 그 기간이 짧아 효율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힘들며, 또한 일부 동의 경우 주민자치위원 신청사례가 많지 않아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있으므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현실적이면서 시의 적절하게 수정함.

나. 수정내용

○ 안 제17조 제1항 중

“2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소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 경우 당연직 고문은 2명 이내의 고문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를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별도로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하며.

○ 제17조 제7항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함.

5.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8-1
----------	------------

제안년월일 : 2016. 3.

제출자 : 허홍석 위원외 1인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 중 비례대표 구의원 당연직 고문으로 명시 부분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년 1회 연임을 2년 2회 연임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함.

2. 주요내용

- 안 제17조 제1항 중

“2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들 수 있으며,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소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 경우 당연직 고문은 2명 이내의 고문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를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별도로 2명 이내의 고문을 들 수 있다.”로 하며.

- 제17조 제7항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 및 당연직 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7조 제1항 중

“2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소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 경우 당연직 고문은 2명 이내의 고문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를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별도로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하며.

○ 제17조 제7항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 및 당연직 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기능) ①、② (생 략)</p> <p>③ 제2항의 <u>규정에</u>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p>	<p>제5조(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규정에도</u> ----- ----- ----- -.</p>	<p>제5조(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규정에도</u> ----- ----- ----- -.</p>
<p>제7조(운영) ① ~ ⑤ (생 략)</p> <p>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 개발, 협조,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u>구별로 전문가</u>,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p> <p>⑦ (생 략)</p>	<p>제7조(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 <u>전문가</u>----- ----- ----- --.</p> <p>⑦ (현행과 같음)</p>	<p>제7조(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 <u>전문가</u>----- ----- ----- --.</p> <p>⑦ (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용료 등) ①、② (생 략)</p>	<p>제10조(사용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용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생략)

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2」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라서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

③ -----
----- 구청장이 별표 1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있고 -----
----- 등은 별표 2로 -----
정하며, 감면자에 대한 증빙서류 등
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⑥ -----

③ -----
----- 구청장이 별표 1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있고 -----
----- 등은 별표 -----
2로 정하며, 감면자에 대한 증빙서
류 등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⑥ -----

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16조(기능)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 (생략)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별도로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방법으로-----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규정에도 -----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2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소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 경우 당연직 고문은 2명 이내의 고문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방법으로-----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규정에도 -----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별도로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 (생략)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
(생략)

③ 고문은 자치회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⑤ (생략)

제20조(위촉 해제) ① 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개최, 심의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자치회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촉 해제) ①

-----구청장에게 위촉
해제를 의뢰할 수 있으며-----

-----. <단서 삭제>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자치회관이 원활하게 운영될-----
-----.

④、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촉 해제) ①

-----구청장에게 위촉
해제를 의뢰할 수 있으며-----

-----. <단서 삭제>

를 생략할 수 있다.

1.(생략)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4. -----
--- 어긋나는 행위를 한---

5. 품위손상,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 수행하기-----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4. -----
--- 어긋나는 행위를 한---

5. 품위손상,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 수행하기-----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p>[별표 1]</p> <p>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제10조제3항 관련)</p> <p>1. 기본시설 사용료 - 시설명 : 다목적회의실 등 - 사용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무료 ·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시간당 10,000원이하 ※ 1시간 초과시 마다 50%추가 부담</p> <p>2. 수강료 (단위 : 원)</p> <table border="1" data-bbox="136 943 745 1134"> <thead> <tr> <th>구분</th> <th>수강시간(월)</th> <th>수강료(월)</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수강료</td> <td>10시간 이하</td> <td>13,000원 이하</td> <td rowspan="3">실습재료비는 수익자 본인부담</td> </tr> <tr> <td>20시간 이하</td> <td>25,000원 이하</td> </tr> <tr> <td>20시간 이상</td> <td>30,000원 이하</td> </tr> </tbody> </table> <p>※ 산출근거 : 월시간×시간당강사(자원봉사)수당/20명 (기준수강인원) = 1인당수강료</p>	구분	수강시간(월)	수강료(월)	비고	수강료	10시간 이하	13,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수익자 본인부담	20시간 이하	25,000원 이하	20시간 이상	30,000원 이하	<p>[별표 1]</p> <p>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제10조제3항 관련)</p> <p>1. 기본시설 사용료 - 시설명 : 다목적회의실 등 - 사용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무료 ·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시간당 10,000원이하 ※ 1시간 초과시 마다 50%추가 부담</p> <p>2. 수강료 (단위 : 원)</p> <table border="1" data-bbox="797 943 1415 1110"> <thead> <tr> <th>구분</th> <th>기준</th> <th>수강료(상한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자치회관 프로그램 (문화, 교양강좌 등)</td> <td>월 과목당</td> <td>30,000원</td> <td>재료비, 교재비 본인부담</td> </tr> </tbody> </table> <p>※ 수강료는 동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수강료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신축성 있게 정할 수 있다.</p>	구분	기준	수강료(상한액)	비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문화, 교양강좌 등)	월 과목당	30,000원	재료비, 교재비 본인부담	<p>[별표 1] 개정안과 같음</p>
구분	수강시간(월)	수강료(월)	비고																			
수강료	10시간 이하	13,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수익자 본인부담																			
	20시간 이하	25,000원 이하																				
	20시간 이상	30,000원 이하																				
구분	기준	수강료(상한액)	비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문화, 교양강좌 등)	월 과목당	30,000원	재료비, 교재비 본인부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68 호
----------	--------

제출연월일 : 2015.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 중 비례대표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명문화
- 나. 통장 위촉권자는 구청장인데 반하여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형평에 맞게 위촉권자 변경하여 대표성 확보
- 다. 각 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시간별로 규정된 수강료를 월 수강료 상한액으로 개정하여 강좌별 특성에 따라 수강료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강좌 개설을 통해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2. 주요내용

- 가. 비례대표 구의원 당연직 고문 명시(조례안 제17조1항)
- 나. 주민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위촉 및 위촉해제 권한을 동장 → 구청장으로 변경(조례안 제17조2항, 제20조)
- 다. 수강료 징수기준(세분화된 기준에서 상한액 기준으로 변경)(별표1)
 - 수강시간별 수강료 규정 → 월 수강료 상한액으로 규정
-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사항
 - (1) 규제심사 : 대상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반영)

- 제10조제5항 :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시 감면대상자에 대한 자격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임의적 부당 감면 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할 것을 권고
-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 위원의 위촉해제 요건에 품위손상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위촉해제 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할 것을 권고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5. 5. 21 ~ 6. 10, 20일간) 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구별로 전문가”를 “전문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구청장이 「별표1」”을 “구청장이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있으며”를 “있고”로, “등은 「별표2」로 정한다”를 “등은 별표 2로 정하며, 감면자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방법에 의해”를 “방법으로”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2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소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 경우 당연직 고문은 2명 이내의 고문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을 “다음 각 호의”로, “위촉하여야 한다”를 “선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함”을 “선정함”으로, “위촉하되”를 “하여야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동장”을 “구청장”으로, “위촉한다”를 “동장이 선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방법에 의해”를 “방법으로”, “위원을 새로 위촉한”을 “위원이 새로 위촉된”으로 각각 한다.

제18조제3항 중 “자치회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을 “자치회관이 원활하게 운영될”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촉 해제**”를 “**구청장에게 위촉 해제를 의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을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을 “**어긋나는 행위를 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그 밖에**”를 “**품위손상,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으로,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를 “**수행하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및 고문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제10조제3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 시설명 : 다목적회의실 등
 - 사용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무료
 -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시간당 10,000원이하
- ※ 1시간 초과시 마다 50%추가 부담

2. 수강료

(단위 : 원)

구 분	기준	수강료(상한액)	비 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문화, 교양강좌 등)	월 과목당	30,000원	재료비, 교재비 본인부담

※ 수강료는 동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수강료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신축성 있게 정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능) ①、② (생 략)</p> <p>③ 제2항의 <u>규정에</u>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p>	<p>제5조(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규정에도</u> ----- ----- -----.</p>
<p>제7조(운영) ① ~ ⑤ (생 략)</p> <p>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u>구별로 전문가</u>,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⑦ (생 략)</p>	<p>제7조(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u>전문가</u> ----- ----- -----.</p> <p>⑦ (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용료 등) ①、② (생 략)</p> <p>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u>구청장이 「별표1」</u>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p> <p>④ (생 략)</p> <p>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p>	<p>제10조(사용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구청장이 별표 1</u> -----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p>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라서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16조(기능)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 (생략)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별도로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있고
-----등은 별표 2로 정하며, 감면
자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⑥ -----

----- 방
법으로-----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규정에도 -----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2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소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

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경우 당연직 고문은 2명 이내의 고문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

----- 다음 각 호의 -----

-----선정하여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③ ----- 선정함 -----

----- 하여야 하며, -----

④ (현행과 같음)

⑤ ----- 구청장 -----

----- 동장이 선정하여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생략)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4. -----
----- 어긋나는 행위를 한-----

5. 품위손상,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수행하기-----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제10조제3항 관련)</p> <p>1. 기본시설 사용료 - 시설명 : 다목적회의실 등 - 사용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무료 ·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시간당 10,000원이하 ※ 1시간 초과시 마다 50%추가 부담</p> <p>2. 수강료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 분</th> <th style="width: 20%;">수강시간(월)</th> <th style="width: 20%;">수 강 료(월)</th> <th style="width: 5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수강료</td> <td>10시간 이하</td> <td>13,000원 이하</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실습재료비는 수익자 본인부담</td> </tr> <tr> <td>20시간 이하</td> <td>25,000원 이하</td> </tr> <tr> <td>20시간 이상</td> <td>30,000원 이하</td> </tr> </tbody> </table> <p>※ 산출근거 : 월시간×시간당강사(자원봉사)수당/20명 (기준수강인원) = 1인당수강료</p>	구 분	수강시간(월)	수 강 료(월)	비 고	수강료	10시간 이하	13,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수익자 본인부담	20시간 이하	25,000원 이하	20시간 이상	30,000원 이하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제10조제3항 관련)</p> <p>1. 기본시설 사용료 - 시설명 : 다목적회의실 등 - 사용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무료 ·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시간당 10,000원이하 ※ 1시간 초과시 마다 50%추가 부담</p> <p>2. 수강료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10%;">기준</th> <th style="width: 20%;">수강료(상한액)</th> <th style="width: 5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자치회관 프로그램 (문화, 교양강좌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월 과목당</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00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재료비, 교재비 본인부담</td> </tr> </tbody> </table> <p>※ 수강료는 동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수강료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신축성 있게 정할 수 있다.</p>	구 분	기준	수강료(상한액)	비 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문화, 교양강좌 등)	월 과목당	30,000원	재료비, 교재비 본인부담
구 분	수강시간(월)	수 강 료(월)	비 고																		
수강료	10시간 이하	13,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수익자 본인부담																		
	20시간 이하	25,000원 이하																			
	20시간 이상	30,000원 이하																			
구 분	기준	수강료(상한액)	비 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문화, 교양강좌 등)	월 과목당	30,000원	재료비, 교재비 본인부담																		